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02.9.1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8월 26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2년 8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89회 제1차정례회 제5차위원회(2002.9.14)
상정, 심사, 원안채택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봉주 도시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

나. 주요골자

1) 현 황

- 와우근린공원

- 위치 : 마포구 창전동 산1-73일대
- 면적 : 60,214㎡
- 도시계획 :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반주거지역

- 와우근린공원 편입 대상부지현황
 - 위 치 : 마포구 창전동 3-183외 16필지
 - 면 적 : 13,368.4㎡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국(재무부,건설부)
 - 도시계획 : 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안) : 와우근린공원에 편입

2)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와우	근린공원	마포구 창전동 산1-73일대	60,214	증)13,368.4	73,582.4	

3) 추진경위

- 2002. 5.31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입안
- 2002. 7.22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서울시마포구공고제 2002-340호)
 - 신문공고 : 세계일보, 대한매일
 - 공고기간 : 2002.7.22 ~ 2002. 8. 5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접수의견 및 처리현황
 - 접수의견 : 마포구 창전동 3-197 서강어린이집 토지는 공원 부적격 시설로 부득이 제외되었지만 연결된 같은동 3-230번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정형화를 위해 공원에 편입하는 방안으로 검토 요함
 - 처리결과 : 일부반영(당초 편입면적 13,252.4㎡ → 반영후 편입면적 13,368.4㎡(증116㎡))

4) 기초조사 결과

- 대상지는 와우산배수지와 일반주거지역(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사이에 존치되어 있는 녹지공간으로, 인근주민을 위한 쉼터 1개소(파고라1동 간이탁자 2개)와 시민기념식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기타 지장물은 없음
- 지형은 주거지역에서 배수지방향으로 10도~16도 경사지이며, 기수림은 자작나무,느티나무가 주 수종이며, 일부구간은 배드민턴장 철거후 조경수목(메타세콰이어 등) 식재되어 있음

5) 재원조달방안

- 토지매입비 : 매입대상 부지 없음

6) 환경성 검토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사유 : 와우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공원) 추가지정은 생활환경(일조,바람,에너지,환경오염) 및 자연환경(토양,지형,물순환,녹지,비오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7) 입안사유

우리구 창전동 3-183 일대 와우아파트 철거부지는 와우근린공원에 인접하여 있고 현황이 공원으로, 급속하게 도심화되고 있는 흥대 주변의 부족한 녹지량확충과 와우근린공원 기본계획수립에 반영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위하여 와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코자 입안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본 건은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제6243호)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와우산 근린공원은 마포구 창전동 산1-73 일대 60,214㎡로서 '82년 7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바 있고, 와우 근린공원 편입대상 부지는 창전동 3-183외 16필지로 면적은 13,368.4㎡임.

- 추진경위를 보면 2002년 5월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입안하여 2002년 7월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세계일보, 대한매일)하였음.

공람공고시 접수된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당초 편입면적을 13,252.4㎡에서 13,368.4㎡로 조정하여 총면적은 73,582.4㎡가 되겠음.

- 대상지는 와우아파트 철거부지로 와우산배수지와 다세대 밀집지역인 주거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배드민턴장 철거후 메타세콰이어와 느티나무 등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였고 주민을 위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음.

- 인근 창전동, 상수동 일대와 흥대 주변은 급속한 도심 개발로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바, 도심내 녹지량 확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요구되며, 와우근린공원 일대 녹지량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미 포함된 어린이집은 지은지 20여년이 경과되어 재건축하여야 하나 지역이 높은곳에 위치하여 부적절함. 공원부지로 편입해야 되지 않은가 ?
- 답변요지(도봉주 도시개발과장) : 공원에 편입되도록 서울시에 진달하겠음.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도시계획시설내에 건물이 있는가 ?
- 답변요지(도봉주 도시개발과장) : 없음.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토지의 소유자는 ?
- 답변요지(도봉주 도시개발과장) : 국공유지와 서울시 소유임.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이번 계획에 어린이집이 편입이 안된 사유는 ?
- 답변요지(도봉주 도시개발과장) : 이지역 주변에 태영APT, 금호APT가 신축되어 어린이집의 필요성 때문에 제외하였음.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어린이집의 대지와 건물 면적은?
- 답변요지(도봉주 도시개발과장) : 대지는 100평, 건물은 50평임.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태영APT, 금호APT의 북측인 뒷편에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집의 위치가 매우 높아 이지역의 생활권이 아니므로 공원으로 편입되어야 함 ?
- 답변요지(도봉주 도시개발과장) : 서울시에 진달하겠음.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공람·공고시 세계일보, 대한매일에 하는가. 많은 사람이 보는 신문에 하기 바람.
- 답변요지(도봉주 도시개발과장) : 앞으로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동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도시계획 용도지구(마포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2002. 9.

마 포 구 청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제출년월일 : 2002. 9.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의안번호	
------	--

1. 건명 : 마포구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2. 상정사유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

3. 현황

- 강변북로 성산대교~상암동 서울시계 구간 역사문화미관지구 신설
 - 위 치 : 강변북로 상암동시계~성산대교
 - 규 모 : 연장 3450m, 폭원 양측12m
 - 도시계획현황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도시계획(안) :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방안에 따라 성산대교~상암동 시계구간 역사문화미관지구 신설

- 토정길 구간 일반미관지구 변경
 - 위 치 : 마포동34~합정동139
 - 규 모 : 연장 3268m, 폭원 양측12m
 - 도시계획현황 :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 도시계획(안) : 토정길구간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된 구간을 따라 미관지구 폭원,연장 변경, 폐지구간 없이 위치 변경하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나.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강변북로	역사문화미관지구	현석동114 ~ 현석동177간	8,640	360	양측 12	서고 164호 (82.4.22)	
변 경	강변북로	역사문화미관지구	현석동116~현석동 150	6,960	290	양측 12	현석동114~145(폭측12m)구간에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도로축소(25m→15m)에따라 강변북로 북측 도로선형으로 위치이동 함. (기존 지정은 폐지 하고, 현석동 116~150 구간으로 신규지정)	
			현석동164~현석동 177	1,680	70	양측 12	도로축소(25m→8m)에 따라 강변북로 북측 좌·우 선형을 고려하여 일부조정 변경지정	

5. 추진경위

- '62.12. 8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건설부고시 177호)
- '97.12.23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 주변가로망 연계체계 등을 감안 폭원축소 및 부분폐지 대상으로 선정
- '98. 2.27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요청(구→시)
 - 15m 도로 강변북로에 미접속
- '98. 8. 9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재검토 지시(시→구)
 - 강변북로와 연계이용방안 및 밤섬APT방면 6m 도로와의 연계방안 강구
- 2000.2.22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요청(구→시)
 - 마포구 공고 1999-383호 도시계획(안)으로 요청
- 2000.3.18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요청 건 재검토(시→구)
- 2000.9.26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재요청(구→시)
- 2000.11.6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시→마포구)
- 2001.11.17: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요청에 대한 회신(시→마포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수변경관지구지정이 예상되므로 호수아파트(10층) 높이로 층수규제 필요
 - 폭6m도로는 강변북로측 안전지대설치등 선형에 대한 재조정 필요함.
 - 폭15m와 6m도로의 교차지점 충분한 공간확보할 것.
- 2002.4.25 : 시·구 회의결과
 - 강변북로변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추가지정
 - 폭원6m로 축소구간(연장120m)은 응벽시작점에서 끝점까지 2m 도로폭을 더 확보하여 안전지대 활용
 - 도로폭 축소구간 변경결정과 역사문화미관지구 변경결정 입안 동시상정 키로 함

○ 도시계획(안)공람·공고 접수의견 및 처리현황

- 접수의견 : 토정길역사문화미관지구변경 및 일반미관지구 신설에 대하여 조서내용이 기존노선을 미관지구 변경하고 도로선형변경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도로선형 변경되는 구간의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후에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도로선형에 맞추어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서내용을 재검토하여 수정요함(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처리현황 :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주무부서인 서울시(도시계획과) 의견에 따라 토정길구간의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 조서를 수정하여 구의회이견청취 상정함

·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조서 수정안

구분	지구명	지구의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당초안	토정길	역사문화미관지구(4종)	마 포 동 ~합정동	78,432	3,268	양측 12	서고164 (82.4.22)	
		일반미관지구	마포동34번지 ~ 합정동185	78,432	3,268	양측 12		합정동359~합정동185구간은 도로폭원축소된 구간을 따라 미관지구 위치변경
		일반미관지구	상수동51 ~ 상수동349	10,800	450	양측 12		서고제120호(99.4.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된 구간을 따라 일반미관지구 신설
수정후	토정길	역사문화미관지구(4종)	마 포 동 ~합정동	78,432	3,268	양측 12	서고164 (82.4.22)	
		일반미관지구	마포동34 ~합정동185	78,432	3,268	양측 12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된 구간을 따라 미관지구 폭원,연장 변경 없이 위치 이동조정하여 미관지구 변경

6. 기초조사 결과

연번	가로명	기정	가로별 건축물 현황(%)						변경추진	폭원 (m)	연장 (m)	도로폭 (m)	비고
			총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이상					
1	강변로		-	-	-	-	-	-	역사문화	양측12	3,450	35~75	
2	토정길	역사문화	100	33.9	26.5	17.2	16.7	5.7	일반미관	양측12	3,268	20	

7. 자원조달방안

-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에 따른 예산소요 별도 책정 없음.

8. 환경성 검토결과

- 특이사항 없음.

9. 입안사유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2000.7.1)에 따른 개정법령의 종별지정목적에 부합 되도록 우리구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관계전문가 및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서울시도시58410-208(2002.1.24)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방안에 따라 성산대교~상암서울시계 구간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신설하고, 토정길구간에 대하여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

첨 부 :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 및 변경결정 도면 1부.끝.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안) 총괄도

S=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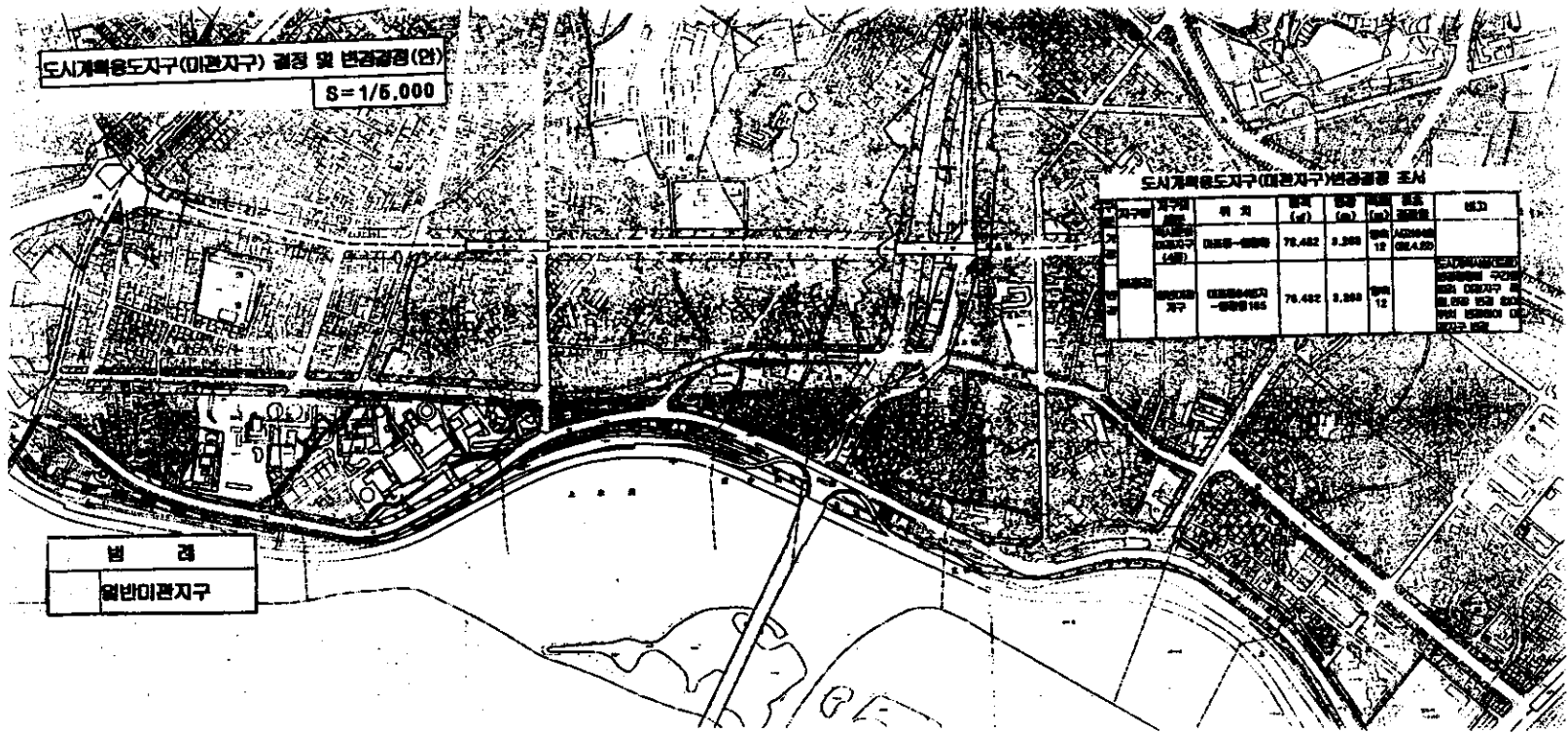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입 일련 번호	지구명	지구 세 분	위 치	면 적 (㎡)	면적 (㎡)	폭력 (m)	정 수 비율	비고
신설	1	강변 북쪽	역사문화 미관지구	영산대교 (상양동 1537)~ 상양행시 계(상양동 1566)	82,800	3,450	양속 12		
				역사문화 미관지구 (4동)	마포동 ~ 홍명동	78,432	3,268	양속 12	시고164 (82.4.22)
변경	2	보정결	역사문화 미관지구	마포동 34 ~ 홍명동 186	78,432	3,268	양속 12		도시계획시행(도 로변경결정)구 간을 따라 미관지 구 폭력·양속변 경 없이 위치 어 용조정에 따라 지구 변경

범 례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도시계획용도지구(이전지구) 결정 및 변경계획(안)
 1:5,000

도시계획용도지구(이전지구)변경계획 주요

구분	면적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전체	78,482	3,388	12	12	12
일반이전지구	78,482	3,388	12	12	12

일반이전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용도지구(마포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2002. 9.

마 포 구 청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2002. 9.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건명 : 마포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2. 상정사유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

3. 현황

- 위치 : 마포구 현석동 114-1호~177-1호간
- 도시계획현황 :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도로(일부)저축
- 도시계획시설(도로) : (기정) 폭25m, 연장 360m
 - 도시계획(안) : (변경) 폭15m 연장240m, 폭8m 연장 120m
- 역사문화미관지구 : (기정) 폭원 양측12m, 연장360m
 - 도시계획(안) : (변경) 폭원 양측 12m, 연장290m (:: 위치이동)
(변경) 폭원 양측 12m, 연장 70m (:: 조정)

4.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규 모(m)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정	대로	3류	16	25	360	보 간선도로	현석동 114-1	현석동 177-1	일반 도로	
변경	중로	2류	-	15	240	집산도로	현석동 115-2	현석동 145-4	"	
변경	소로	2류	-	8	120	국지도로	현석동 148-1	현석동 155	"	

4.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강변 북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성산대교 (상암동 1537)~ 상암동시 계(상암동 1566)	82,800	3,450	양측 12		
기정			역사문화 미관지구 (4종)	마포동 ~ 합정동	78,432	3,268	양측 12	서고164 (82.4.22)	
변경	2	토정길	일반미관 지구	마포동 34 ~ 합정동 185	78,432	3,268	양 측 12		도시계획시설(도 로)변경결정된 구 간을 따라 미관지 구 폭원·연장변 경 없이 위치 이 동조정하여 미관 지구 변경

5. 추진경위

- 2001.3.30 : 토정길 역사문화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 변경입안
(도로폭원 축소구간 미관지구 폐지)
- 2002.1.24 :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방안 통보
- 주요내용 : 강변북로 성산대교~서울시계구간 역사문화미관지구 신설 및
토정길 도로폭원 축소구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 2002.3.27 :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 입안
- 강변북로 성산대교~상암시계 역사문화미관지구 신설
- 토정길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된 구간을 따라 미관지구 폭원변
경, 연장 변경 없이 위치 이동조정하여 미관지구 변경
- 2002.4.6 :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 따른 공람·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02-158호)
- 게재신문 : 한겨레신문, 문화일보(2002.4.6일자)
- 공고기간 : 2002.4.6 ~2002.4.20

- 2002.8. 8 : 도시계획시설(도로) 집행계획 수립(토목58700-3957호)
- 2002.8.14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 입안
- 2002.8.20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서울시마포구공고제2002-376호)
 - 신문공고 :
 - 공고기간 : 2002.8.20 ~ 2002. 9. 3
 - 점수의견 및 처리현황 : 점수의견 없음

6. 기초조사 결과

- 도로현황 : 신수동 388-2~현석동 89-1호간 폭15m 도로는 '97.4.11~11.28 도로개설(L=800m) 되었으며, 미개설 구간은 현석동 114-1~177-1호간 연장 360m가 남았음. 보조간선도로인 대흥로(폭30m), 토정길(폭20m)이 있으며 고속화도로인 강변북로(폭15m)에 접해 있음.
- 건물현황 : 호수아파트(1개동), 밤섬 현대아파트(3개동), LG아파트, 현대아파트(3개동) 등이 주변에 위치하며 골프연습장(1개소), 신석초등학교, 신수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음.
- 교량현황 : 마포대교와는 1,000m, 서강대교와는 400m 거리에 있음.
-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현황 : 현재 기존 25m도로를 따라 현석동114번지에서 현석동177번지 방향으로 진행할 때 우측에 폭원12m 지정되어 있음.
- 재개발 현황 : 현석동 190번지 및 신정동 50번지 일대 총 건립세대수 503세대의 현석 주택재개발구역 있음.

7. 자원조달방안

- 예산구분 : 시비 지원대상
- 예산확보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그에 따른 시비지원요청
-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 총사업비 5,807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년 차 별 투 자 계 획				2007이후	비 고
			소 계	2003	2004	2005		
시 비	5,807	-	5,807	2,617	2,500	690		-

- 보상 : 5,117백만원
- 공사 : 690백만원(설계비 및 공사비)

8. 환경성 검토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사유 :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폭25m를 폭15~8m로 폭원축소하여 변경 결정하는 것은 생활환경(일조,바람,에너지,환경오염) 및 자연환경(토양,지형,물순환,녹지,비오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환경개선 효과가 있음

9. 입안사유

우리구 현석동144-1호 ~ 177-1호간 강변북로 인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서울시 재정비계획수립용역 결과 폭원축소 및 부분폐지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합리적 토지이용과 가로망 연계체계등을 감안 구간별로 도로 폭원을 축소하고, 이에따른 용도지구(미관지구)에 대하여 강변북로 북측 좌·우 미관지구선형을 고려 위치이동 및 축소되는 도로 선형에 따라 일부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코자 입안함.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s =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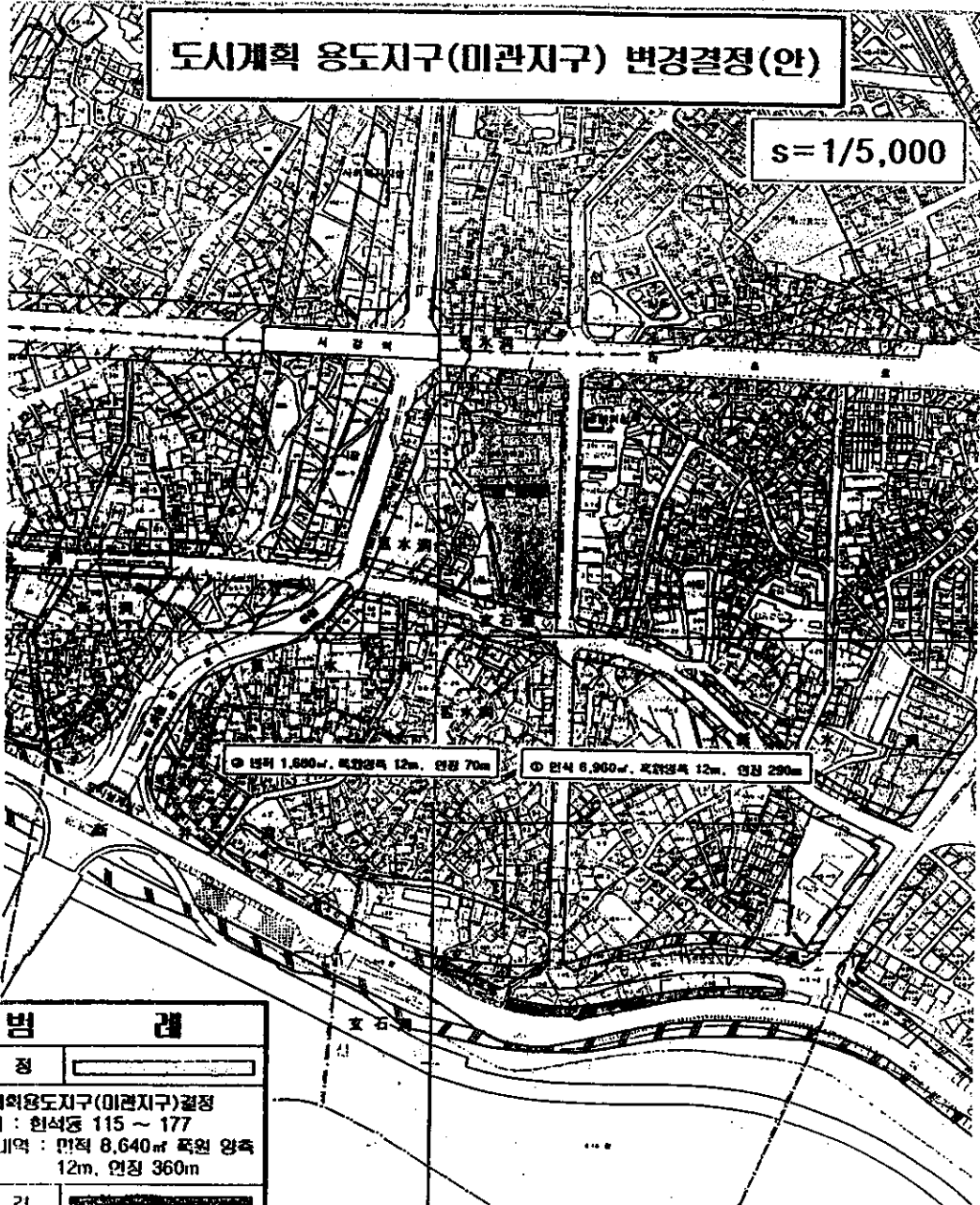


범례	
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역	
- 위치 : 한식동 114-1 ~ 177-1	
- 길정내역 : 폭 25m, 인장 360m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① 변경	
- 위치 : 한식동 115-2 ~ 145-4	
- 변경내역 : 폭 15m, 인장 240m	
② 변경	
- 위치 : 한식동 148-1 ~ 155	
- 변경내역 : 폭 8m, 인장 120m	

구분	규 모(m)					기 능	기 정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인장					
기정	대로	3류	16	25	360	보조간선도로	한식동 114-1	한식동 177-1	일반도로	
변경	중로	2류	-	15	240	집산도로	한식동 115-2	한식동 145-4	"	
변경	소로	2류	-	8	120	국지도로	한식동 148-1	한식동 155	"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

s=1/5,000



범례	
기정	
○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 - 위치 : 한식동 115 ~ 177 - 결정내역 : 면적 8,640㎡ 폭원 양측 12m, 연장 360m	
변경	
○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 ① 변경 - 위치 : 한식동 116 ~ 150 - 변경내역 : 면적 6,960㎡ 폭원 양측 12m, 연장 290m ② 변경 - 위치 : 한식동 164 ~ 177 - 변경내역 : 면적 1,680㎡ 폭원 양측 12m, 연장 70m	

구분	지구명	지구내역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참 조 규 정	비 고
기정	경변 북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한식동 115~ 한식동 177간	8,640	360	양측 12	시고 164호 ('82.4.22)	
변경	경변 북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한식동 116 ~ 한식동 150 간	6,960	290	양측 12		(당초) 한식동 114~145(면적 12m 구간)에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도포축소(25m-15m)에 미관 배치)고, 경변북로 폭원 도로선상으로 위차 면적 6,960㎡ 한식동 116 ~ 150구간으로 신규지정
			한식동 164 ~ 한식동 177간	1,680	70	양측 12		도로축소(25m-0m)에 따라 경변북로 폭원 좌·우 선상외 고지 6,000㎡ 합계 2,080㎡ 변경지정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창취

2002. 9.

마 포 구 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제출년월일 : 2002. 9.

의안번호	
------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건명 : 마포구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2. 상정사유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

3. 현 황

가. 와우근린공원

- 위치 : 마포구 창전동 산1-73일대
- 면적 : 60,214㎡
- 도시계획 :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반주거지역

나. 와우근린공원 편입 대상부지현황

- 위 치 : 마포구 창전동 3-183외 16필지
- 면 적 : 13,368.4㎡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국(재무부,건설부)
- 도시계획 : 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안) : 와우근린공원에 편입

4.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와우	근린공원	마포구 창전동 산1-73일대	60,214	중)13,368.4	73,582.4	

5. 추진경위

- 2002. 5.31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입안
- 2002. 7.22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서울시마포구공고제 2002-340호)
 - 신문공고 : 세계일보, 대한매일
 - 공고기간 : 2002.7.22 ~ 2002. 8. 5
-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접수의견 및 처리현황
 - 접수의견 : 마포구 창전동 3-197 서강어린이집 토지는 공원 부적격 시설로 부득이 제외되었지만 연접된 같은동 3-230번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정형화를 위해 공원에 편입하는 방안으로 검토 요청
 - 처리결과 : 일부반영
(당초 편입면적 13,252.4㎡ → 반영후 편입면적 13,368.4㎡(증116㎡))

6. 기초조사 결과

- 대상지는 외우산배수지와 일반주거지역(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사이에 존치되어 있는 녹지공간으로, 인근주민을 위한 쉼터 1개소(파고라1동 간이탁자 2개)와 시민기념식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기타 지장물은 없음
- 지형은 주거지역에서 배수지방향으로 10도~16도 경사지이며, 기수림은 자작나무, 느티나무가 주 수종이며, 일부구간은 배수면토장 철거후 조경수목(메타세콰이어 등) 식재되어 있음

7. 자원조달방안

- 토지매입비 : 매입대상 부지 없음

8. 환경성 검토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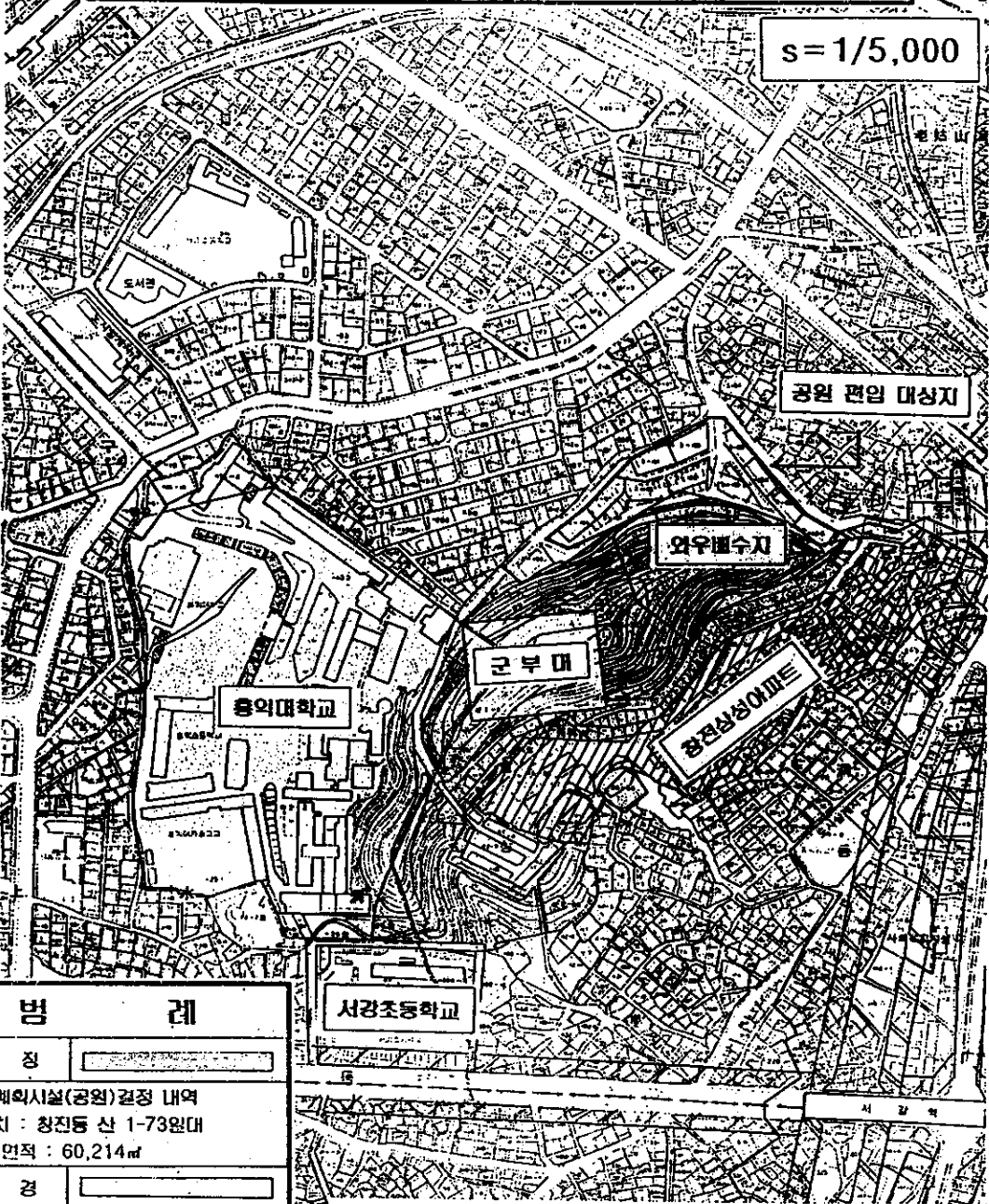
- 특이사항 없음
 - 사유 : 와우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추가지정은 생활환경(일조,바람,에너지,환경오염) 및 자연환경(토양,지형,물순환,녹지,비오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9. 입안사유

우리구 창전동 3-183 일대 와우아파트 철거부지는 와우근린공원에 인접하여 있고 현황이 공원으로, 급속하게 도심화되고 있는 홍대주변의 부족한 녹지량 확충과 와우근린공원 기본계획수립에 반영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위하여 와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코자 입안함.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

s = 1/5,000



범 례

기 정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내역
- 위치 : 청진동 산 1-73일대
- 결정면적 : 60,214㎡

변 경

-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 추가편입 위치 : 청진동 3-183외 16필지
- 추가편입 면적 : 13,368.4㎡
- 변경후 면적 : 73,582.4㎡

구분	공용명	시설의세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외우	근린공원	미포구 청진동 산1-73일대	60,214	(중)13,368.4	73,582.4	